

## 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

본교 예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 학칙시행내규 개정 주요골자

1. 학칙시행내규 제30조(학사경고) 내용 중 예배에 관련된 학사경고의 내용이 개정됨으로 ④항 학사경고의 내용을 삭제하므로 학사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## 학칙시행내규 개정 안

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(학사경고) ①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.5 미만인 자, 또는 필수 수강과목 3과목 이상 F인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.

### **④ 삭제 (2011.10.01)**

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학사경고) ①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.5 미만인 자, 또는 필수 수강과목 3과목 이상 F인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.</p> <p>④ <u>[예배] 과목이 NP인 경우 당해학기 연속(1,2학기) 또는 NP학점을 총 3회 받을 시 학사경고를 한다.</u></p> <p>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.</p>	<p>제30조(학사경고) ①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.5 미만인 자, 또는 필수 수강과목 3과목 이상 F인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.</p> <p>④ <b>삭제 (2011.10.01)</b></p> <p>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